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공고(안)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8일

노 원 구 청 장

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○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근무처	임용분야	인원	직 무 내 용
노원구보건소 (의약과)	자살예방 전담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“마”급 (1명)	-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및 상담 - 생명지킴이 교육 및 청소년 생명사랑학교 운영 -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캠페인 지원 -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운영 -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관리 - 그 밖의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시험 방법

-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 -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신체검사, 신원조회 및 비위면직자 등 사회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,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**최종 합격자**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- ☞ 결격사유 조회,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(1명)를 선발할 수 있음

4. 응시 자격 요건

○ 아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(기준일 :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)

구 분		자 격 기 준
기본자격	공통사항	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- 연령 : 18세 이상 - 지역,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분야별 세부자격	필수요건	○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-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-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·시설 등에서 정신건강분야 또는 간호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
	우대요건	- 임용예정 직무분야(정신건강, 간호, 사회복지) 관련 자격증 소지자 -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및 실제 활용에 능숙한 자

※ ‘경력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여야 함.

5.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

○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○ 근무조건

가. 근무시간 : 주 35시간 근무 (1일 7시간, 월~금)

나. 근무장소 : 의약과(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생명존중팀)

다. 보수수준

- 시간선택임기제 '마'급 : 연봉 25,325천원(각종 수당 별도)
 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.
 -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
- 라. 공무원 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(선택) 가입

6. 채용일정 및 방법

○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및 접수 : 2026. 10. 6.(화) ~ 10. 8.(목)

나. 접 수 처 : 노원구보건소 의약과

다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(18시까지) 또는 우편(등기) 접수

① 방문접수 : 노원구보건소 3층 의약과 직접방문

※ 평일 근무시간 (09:00~18:00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,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

※ 노원구 수입증지(수수료 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
② 우편접수 :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보건소 3층 의약과 생명존중팀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(2026. 10. 8.(목) 18시)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함

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우체국에서 5,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송부

※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(☎02-2116-4328)

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/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○ 시험일정

가. 제1차 시험(서류전형)

- 합격자 발표 : 2026. 10. 13.(화)
-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

나. 제2차 시험(면접심사)

- 일시 및 장소 : 2026. 10. 14.(수), 노원구청 5층 소회의실2
- 합격자 발표: 2026. 10. 15.(목),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

다. 임용일 : 2026. 11. 1.(일) 예정(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7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<필수> [별지 제1호], [별지 제2호]

- 응시수수료 : 마급(5,000원)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(구청 재무과에서 구입)
-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나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<필수> [별지 제3호], [별지 제4호]

다.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<필수> [별지 제5호]

라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필수> [별지 제6호]

마.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별지 제7호]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) 1부 <필수>

바. 임용분야 경력증명서(원본) 또는 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1부 <필수>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사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<필수>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아. 우대 자격증 사본 1부 <선택>

8. 기타(유의)사항

가. 복무는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따릅니다.

나. 원서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(www.nowon.kr)에서 첨부파일(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)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.

다.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
- 라.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마.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사.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아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.
- 자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차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9. 공고내용 문의처

○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생명존중팀 ☎ 02-2116-4328)